

특허협력조약

발신: 국제조사기관

PCT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
(PCT규칙 43의2.1)

수신:
김종석

대한민국 51535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754, 4층 관특허법률사무소

발송일 (일/월/년) 2016년 12월 23일 (23.12.2016)

출원인 또는 대리인의 서류참조기호
WP20160003

추가적인 조치
아래 2를 참조

국제출원번호
PCT/KR2016/009543

국제출원일 (일/월/년)
2016년 08월 27일 (27.08.2016)

우선일 (일/월/년)
2015년 08월 28일 (28.08.2015)

국제특허분류(IPC)
A47J 37/06(2006.01)i

출원인
허진우

1. 본 견해서는 다음 기재란에 관한 내용을 포함합니다.

- 제1기재란 견해서의 기초
- 제2기재란 우선권
- 제3기재란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이용가능성에 관한 견해 부작성
- 제4기재란 발명의 단일성 결여
- 제5기재란 신규성, 진보성 또는 산업상이용가능성에 관한 견해(PCT규칙 43의2.1(a)(i)), 이를 뒷받침하는 인용문헌 및 설명
- 제6기재란 특이 인용문헌
- 제7기재란 국제출원의 흠결
- 제8기재란 국제출원에 관한 의견

2. 추가적인 조치

국제예비심사가 청구되면, 본 견해서는 국제예비심사기관("IPEA")의 견해서로 간주될 것입니다. 다만, 출원인이 본 기관 이외의 기관을 IPEA로 선택하고, 그 선택된 IPEA가 PCT규칙 66.1의2(b)에 따라 본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가 위와 같이 간주되지 않을 것임을 국제사무국에 통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본 견해서가 상기와 같이 IPEA의 견해서로 간주되는 경우, 출원인은 서식 PCT/ISA/220의 발송일로부터 3월 또는 우선일 부터 22월 중 늦게 만료되는 날 이전에 의견서 및 보정서(해당하는 경우)를 IPEA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른 선택사항에 대하여는 서식 PCT/ISA/220에 대한 안내문을 참조하십시오.

ISA/KR의 명칭 및 우편주소
대한민국 특허청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4동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팩스번호 +82-42-481-8578

본 견해서의 완료일
2016년 12월 22일 (22.12.2016)

심사관
강민정
전화번호 +82-42-481-8131



제1기재란 본 견해서의 기초

1. 언어와 관련하여, 본 견해서는 아래에 기초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출원시의 언어로 된 국제출원

국제조사를 위하여 _____ 로 번역되어 제출된 국제출원의 번역문
(PCT규칙 12.3(a) 및 23.1(b))

2. 본 견해서는 PCT규칙 91에 따라 당해 기관이 허가하였거나 당해 기관에 통보된 **명백한 잘못의 정정**을 고려하여 작성되었습니다(PCT규칙 43의2.1(a)).

3. 국제출원에 게시된 핵산염기 및/또는 아미노산 서열과 관련하여, 본 견해서는 아래에 기초하여 작성되었습니다.

a. 아래의 형태로 출원시 국제출원의 일부를 구성하는 서열목록

부록 C/ST.25 텍스트 파일

서면 혹은 이미지 파일

b. PCT 규칙 13의3.1(a)에 따라 국제출원과 함께 국제조사만을 목적으로 부록 C/ST.25 텍스트 파일의 형태로 제출된 서열목록

c. 국제조사만을 목적으로 국제출원일 이후에 아래 형태로 제출된 서열목록

부록 C/ST.25 텍스트 파일 (규칙 13의3.1(a))

서면 혹은 이미지 파일 (규칙 13의3.1(b) 및 시행세칙 713)

4. 추가로 서열목록에 대하여 하나 이상의 버전이나 사본이 제출된 경우, 후속 버전 또는 추가된 사본에 기재되어 있는 정보가 출원시 출원의 일부를 구성하는 정보와 동일하거나 또는 출원시의 게시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진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5. 추가 의견:

제5기제란 신규성, 진보성 또는 산업상이용가능성에 관한 견해(PCT규칙 43의2.1(a)(i)), 이를 뒷받침하는 인용문헌 및 설명

1. 견해

신규성 (N)	청구항	1-3	있음
	청구항	없음	없음
진보성 (IS)	청구항	1-3	있음
	청구항	없음	없음
산업상 이용가능성 (IA)	청구항	1-3	있음
	청구항	없음	없음

2. 인용문헌 및 설명:

참고한 인용문헌은 다음과 같습니다.

- D1: KR 20-2010-0002316 U (김선기) 2010.03.05
- D2: KR 10-1999-0007621 A (김선희) 1999.01.25
- D3: KR 20-0475939 Y1 (이영구) 2015.01.15
- D4: KR 10-1379180 B1 (정명훈 등) 2014.03.31
- D5: KR 20-2012-0005098 U (윤순선) 2012.07.12

1. 신규성 및 진보성

1.1. 청구항 제1항 내지 제3항

1.1.1. 독립항: 청구항 제1항

청구항 제1항과 관련하여, 인용문헌 D1에는 전방으로 개구부에 의해 개방된 타입을 가지며, 구이실(11)에 마련되어 구이실 내부에 안내레일(16a, 16c)이 설치된 본체(10); 사각틀을 이루는 프레임(22) 내측에 그릴(21)이 결합되어 이루어진 그릴서랍(20a, 20b); 및 사각틀을 이루는 프레임(31)에 손잡이(33)를 갖는 전면판(32)이 일체로 된 것이며, 숯을 담은 숯통(34)을 거치하는 숯통 거치서랍(30)을 포함하는 황토 찜숯 바비큐용 구이기가 기재되어 있습니다(청구항 1, 4, 도면 1, 5 참조).

청구항 제1항과 관련하여, 인용문헌 D2에는 구이부(2)의 저면 가장자리 근접부에 이물질 받이(3)가 끼워져 결합되도록 하는 걸림턱 형상의 이물질 받이 지지구(6); 및 구이부(2) 하부 이물질 받이 지지구(6) 내에 끼워질 수 있는 크기로 되며, 살대(3a)의 단면은 “U”자 형상으로 되어 구이부(2)에 올려진 고기로부터 떨어지는 이물질을 받아 저장할 수 있는 이물질 받이(3)를 포함하는 이물질 받이를 구비한 숯불 구이판이 기재되어 있습니다(페이지 2, 도면 2 참조).

추가 기재란에 계속

추가 기재란

이전 기재란의 공간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제5 기재란의 연속

청구항 제1항과 관련해서, 인용문헌 D3에는 석쇠의 외곽부에 기름을 수용할 수 있는 배출구가 형성되고, 제1 및 제2 석쇠부에 고기를 구울 때 발생하는 기름을 이송하기 위하여 복수의 선재가 'V'자, 'U'자, 'L'자 중 중 어느 하나의 단면을 갖도록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직화구이용 석쇠가 기재되어 있습니다(단락 [0008]-[0046], 도면 1-4 참조).

청구항 제1항은 구이용 숯불 직화 그릴이 관통공의 가장자리에 상향 돌출된 돌출턱을 매개로 관통공과는 구획되면서 구이판의 개구부와 동일 수직선상에 위치되는 저장공간이 형성되며, 저장공간에는 물이 저장되어 고기를 구울 때 물이 증발됨에 따른 수증기열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구성되고, 저장공간이 서로 연통되도록 형성되어 저장된 물 혹은 저장될 기름이 동일한 수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구성된 기름받이판을 포함하는 점에서 인용문헌 D1과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상기 차이점은 다른 인용문헌들(D2-D5)에도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상기 인용문헌들을 고려해보아도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청구항 제1항은 PCT 제33조(2)에 따른 신규성 및 PCT 제33조(3)에 따른 진보성이 있습니다.

1.1.2. 종속항: 청구항 제2항 및 제3항

청구항 제2항 및 제3항은 청구항 제1항을 직접적으로 인용하는 종속항이므로 PCT 제33조(2)에 따른 신규성 및 PCT 제33조(3)에 따른 진보성이 있습니다.

2. 산업상 이용가능성

청구항 제1항 내지 제3항에 기재된 발명은 PCT 제33조(4)에 따라 산업상 이용가능합니다.